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2-117호
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93-1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"http://eum.go.kr"에서 열람가능)는 사하구청(도시정비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22년 9월 7일

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

1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기정	다대4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사하구 다대동 93-7번지 일원	246,907.2	-	246,907.2	

2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(1) 용도지역·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(조서생략)

(2) 토지이용계획(안)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**246,907.2**	**-**	**246,907.2**	**100.0**	
주택건설용지	**147,490.2**	**증) 408.8**	**147,899.0**	**59.9**	
공동주택	138,027.6	-	138,027.6	55.9	
근린생활시설	9,462.6	증) 408.8	9,871.4	4.0	
교육연구 및 복지시설	408.8	감) 408.8	-	-	
근린생활 및 교육연구시설	874.0	-	874.0	0.4	
문화 및 집회시설	1,453.4	-	1,453.4	0.6	
공공시설용지	**96,680.8**	**-**	**96,680.8**	**39.1**	
도로	35,149.5	-	35,149.5	14.2	
공원	13,784.7	-	13,784.7	5.6	
녹지	13,389.8	-	13,389.8	5.4	
전기공급설비시설	50.0	-	50.0	0.0	
학교	34,306.8	-	34,306.8	13.9	

※ 변경이외의 사항은 기정과 동일함

※ 변경사유서 : 본 대상지의 용도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춰 금회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을 통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코자 함

(3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(조서생략)

(4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가구 번호	획지 번호	획지규모		용도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	
기정	-	C3	사하구 다대동 93-10번지	408.8	교육연구 및 복지시설	
변경	-	C3	사하구 다대동 93-10번지	408.8	근린생활시설	

※ 변경사유서 : 지역여건에 맞춰 C3획지의 용도를 변경코자 함

(5) 건축물의 용도·높이·건폐율·용적률 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가. 건축물의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	계 획 내 용	
				기정	변경
-	C3	용도	지정용도	교육연구 및 복지시설	근린생활시설
			불허용도	지정용도 이외의 용도	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
※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, 용적률, 높이에 관한 사항은 변경없음

※ 변경사유서 : 지역여건에 맞춰 C3획지의 건축물 지정용도를 변경코자 함

나.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 등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3.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(변경없음)

4. 관계도면 : 게재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. 끝.